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4-43호
2024. 7. 12.(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정정)(고시 제2024-82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83호) 3

공 고(4)

- 인터넷컴퓨터가입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36호) 4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44호) 7
- 미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51호) 8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54호) 12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738호) 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742호)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750호) 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755호) 34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정정)

-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6-73(2016.11.10.)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 시설)에 대하여 시험동 증축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2일

대 덕 구 청 장 대 덕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4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 2). 명칭: **소음진동전문시험실 구축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국방기술품질원
 - 2).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1). 면적: 97,043.6㎡
- 2).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축부지	도로 및 주차장	체육시설	광장부지	조경부지	자연녹지
기정	97,043.60	4,141.60	6,378.76	-	2,843.02	14,302.27	69,377.95
변경		5,382.42	7,844.40	-	3,383.13	11,319.19	69,114.46

· 건축물 건축

구분	구분	기 존	금회공사분	합 계	
	축	건축면적	4,141.60㎡	1,240.82㎡	5,382.42㎡
연면적		11,757.09㎡	1,225.56㎡	12,982.65㎡	
용적률 산정 용면적		8,595.00㎡	1,225.56㎡	9,820.56㎡	
모	건폐율	4.27%	1.28%	5.55%	법정:20%이하
	용적률	8.86%	1.26%	10.12%	법정:80%이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24개월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8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석봉동 353-42	석봉로57번길 4 (석봉동)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7. 1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행 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 기간: 2024. 7. 12. ~ 2024. 7. 26.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청문일시 및 장소: 2024.6.27.(목) 오전 10시 00분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기존 2024. 6. 27.(목)에서 우편 송달 불가 사유로 인해 7. 30.(화)로 변경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처분사항	처분예정일	비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골드PC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길 17, 1 층(신탄진동)	등록취소	2024.8.2.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나.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다. 전화번호: (042) 608 - 6575 / FAX (042) 608-3823
 - 라. 전자우편: sjs9396@korea.kr
6. 유의사항
 -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구술·이메

일)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74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7. 12. ~ 2024. 7. 26.(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호로록호로록	김○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9번길 71, 1층(비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 11. 28.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6일-청문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2. 끝.

**미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미호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1명(붙임1 참조)
2. 공고기간: 2024. 7. 12. ~ 2024. 7. 26. (15일간)
3. 공고장소: 대덕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또한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토지정책과 지적재조사팀(☎042-608-59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 조서

연번	지구구분	종전 토지				산정 토지				면적증감		성명	주소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지목	면적(㎡)	동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1	미호2지구	미호동	266-4	전	345.0	미호동	266-4	전	345.0	0.0	0.0	정*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번길 * *동 ***호(한*빌라)	폐문부재
2	미호2지구	미호동	32	답	344.0	미호동	32	답	289.1	0.0	54.9	송*중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번길 **, ***동 ***호(삼성래미안**아파트)	폐문부재
		미호동	177-1	답	447.0	미호동	177-1	답	435.8	0.0	11.2			
		미호동	195-3	대	711.0	미호동	195-3	대	641.6	0.0	69.4			
3	미호2지구	미호동	348-5	도로	44.0	미호동	348-5	도로	0.0	0.0	44.0	강*남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 ***동 ***호(안성중리2차**아파트)	폐문부재
		미호동	350-1	도로	10.0	미호동	350-1	도로	0.0	0.0	10.0			
4	미호2지구	미호동	268-4	대	300.0	미호동	268-4	대	340.6	40.6	0.0	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	폐문부재
5	미호2지구	미호동	179	대	496.0	미호동	179	대	496.0	0.0	0.0	송*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번길 ***-	폐문부재
6	미호2지구	미호동	213-1	답	3,402.0	미호동	213-1	답	3,402.0	0.0	0.0	송*명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번길 * *-, ***호	폐문부재
7	미호2지구	미호동	195-7	대	483.0	미호동	195-7	대	483.0	0.0	0.0	이*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번길 * *	폐문부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기 간: 2024. 7. 12. ~ 7. 31. (19일간)
- 공고대상: 별첨
-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7.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

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배*식	27로9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동 ***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 버스카이1단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이*현	19로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3, *동 ***호(법동, 유원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심*선	81부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7번길 6-15, ***호(중리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아	89보4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동 ****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100,000	폐문부재
김*란	165마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 ****호(법동, 보람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노*영	165버6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100,000	기타
유*우	30로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WANG *****	56머59**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54번길 60, ***동 ****호(가양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아	대전60바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동 ****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100,000	기타
조*희	204마5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2, *동 ***호(오류동, 삼성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정*춘	280다4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11, ***동 ***호(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관	45고6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서로 36-19, ***동 ***호(장대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주식회사 **이엔지	353너3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50번길 **-*호(대화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이사불명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7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대덕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나. 지휘자와 반주자의 모집 전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42-608-6575, FAX: 042-608-3823, E-mail: sjs939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전화: 042-608-65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를 “공개 모집하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원”을 “단원(지휘자, 반주자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p>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②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

공개 모집하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 -----
-----.

② 단원(지휘자, 반주자 포함)-----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2003.11.22. 개정, 2024.11.23.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3천원)를 정함(안 별

표).

나. 정부조직 변경 사항(국가보훈부장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 042-608-5493, FAX : 042-608-3851, E-mail : alrud721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박미경(전화 : 042-608-54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의료급여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을 “국가보훈부장
 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액 표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제증명 발급	가. 진단서	1통	500원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다.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라.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	1통	500원	
2. 유료접종	가. B형간염	1회	유료접종 수수료는 백신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그 밖의 접종	1회	백신구입원가 및 소모품 비용	
3. 검사	가. A형간염	1회	해당 연도 검사 원가(검사시약비+재료비)	
	나.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 및 재료비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 ----- -----.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 ----- -----.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 「의료급여법」 제3조-----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 -----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 ----- . <단서 삭제>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7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협의회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협의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6764, FAX : 042-608-3832, E-mail : mira2324@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황미라(전화 : 042-608-67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덕구협의회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2024. 1. 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2025. 1. 3.] 제33조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

내 용	의 건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전화 : 042-608-5476, FAX : 042-608-3851, E-mail : 0302dudaos@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 박영옥(전화 : 042-608-54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어린이 놀이터 5. 6. (생 략) ② (생 략)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과태료) ① ----- ----- ----- 5만 원-----.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

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 ⑨ (생략)

제3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④·⑤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